

**【 3 】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의연월일 : 2005. 09. 01

발 의 자 : 원대식 의원 외 2인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방의회 의원의 인상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회의출석에 따른 회기수당을 일 70,000원에서 일 100,000원으로 인상
(안 제3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중 “양주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,000원으로 하며”를 “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,000원으로 하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양주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기수당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<u>70,000원</u>으로 하며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</p>	<p>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기수당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100,000원</u>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장 지방의회

제15조 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, 회기수당(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)의 지급기준은 별표 6,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9.12.31, 2005.08.05>

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
제정 2003. 10. 19 조례 제143호
개정 2004. 3. 11 조례 제15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) 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·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0,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,000원으로 한다. <개정 2004. 3. 11>

②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양주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.

제3조(회기수당)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 중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한다.

②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,000원으로 하며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

제4조(여비)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③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3. 11 조례 제15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4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지 기 준액 구분	철도운 임	선박운 임	항공운 임	자동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인당)	숙박료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의 장 부 의 장	1등급	2등정 액	정 액	정 액	10,000	46,000	25,00 0
의 원	2등급	2등정 액	정 액	정 액	10,000	25,000	18,00 0

- 비 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현지활동 및 여행(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)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.
 2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르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[별표 2] <개정 2004. 3. 11>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4조제3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분	등급	항공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	준비금		
						15일 미만	15일이 상 30일미 만	30일 이상
의장 부의장	가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	나		35	120	78			
	다		35	92	58			
	라		35	79	49			
의원	가	2등정액	30	145	81	130	155	180
	나		30	95	59			
	다		30	70	44			
	라		30	62	37			